

## ■ 조망권 어디까지 인정되나

# 이익 되는 '특별한 가치' 있어야 보호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할 때 창을 열면 시야가 확 트여있는 곳은 값을 더 부른다. 이를테면 뒷 풍경을 보면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조망권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빼지 않는 항목이 됐다.

최근 대법원이 "한강의 조망권 인정 안된다"고 판결, 조망권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은 조망권을 일조권처럼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만 침해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훨씬 까다롭게 되 유사소송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곳곳서 조망권 분쟁=광주시 북구 운암동 현대 아이파크 103동(198.3㎡) 주민들은 지난 6일 "분양 당시 설명한 무등산 조망권이 실제와 다르다"며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시행사인 대신기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직원들이 모델하우스에서 '110동(264.4㎡·80평)이 6층 이상을 가리지 않아 무등산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막상 입주해 보니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구청에 제출한 건축 신고서엔 103동 10층까지는 110동이 시야를 가리는 것으로 돼있다"며 해명하고 있다.

## 무등산 조망권 등 분쟁 잇따라

### 집단 민원·소송에 휘말리기도

동구 운립동 라인광명 아파트 주민들도 지난해 아파트 앞 부지 600여 평에 12층짜리 광명시안빌 1개 동(19세대)을 짓는 공사와 관련, '무등산 조망권'을 주장했다. 주민들이 '층수를 6층으로 낮추자'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 시공사는 10층으로 층수를 낮췄다.

◇법적 규정 없어 저자체도 골머리=광주시 운구청은 최근 조망권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무등산 자락의 조망권 침해를 우려해 재때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게 학근이었다.

한국건설은 지난 2005년 12월 25일 동구 운립동 운립중학교 앞편에 88세대(168㎡·10층)의 아파트 사업신청을 냈다. 하지만 동구청은 인근 지역의 환경보호와 무등산 자락



광주시 동구 운암동에 신축 중인 '광명시안빌'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라인광명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무등산 조망권을 해친다면 건설사 층에 향의해 층 수를 낮췄다.

인 태봉산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건설사 측은 곧바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고 동구청은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패소했다. 법적 결론은 내려졌지만 주민들과 건설사

됐다. 당시 시는 북구 두암동·동구 산수동 일부지역 등 제1순환도로와 무등산 사이의 일부 지역을 5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 설정해 자연스럽게 무등산 조망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반면 목포시는 지난 1995년 바다에서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유달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주도로 아래 6층 이상 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유달산 조망권'을 도시계획에 반영했다.

◇법원 판례로 본 조망권의 조건=최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리바류아파트 주민 18명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GS건설(구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청과 건설사 측은 2심 재판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59세대는 그대로 짓고 44세대는 4층 이하로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구청과 건설사 측은 2심 재판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59세대는 그대로 짓고 44세대는 4층 이하로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무등산 조망권도 지난 1990년대

광주시가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도시경관 계획'을 추진, 보호하려 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 반발로 무산

**▲ 조망권 (眺望權 · Prospect right)**=특정한 위치에서 자연경관·역사 유적·문화유산 등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 좋은 의미로는 건물의 창문이나 베란다 등에서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망권은 특정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사회통념상 당사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주지법은 조망권을 인정해 지난 2004년 광주시 운암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광주지법은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을 위해 ▲17층짜리 14층 이상 ▲16~18층짜리 13층 이상 ▲14층 짜리는 11층 이상으로 건축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자전거 수송분담률 2% 땐

# 500억원 비용 절감

## 환경운동연합 세미나

광주시에서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이 2%에 이르게 되면 연간 500억원의 환경 및 기후 편익·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석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 연구원은 12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개최하는 '광주광역시 과연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에 앞서 11일 미리 배포한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광주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이미지를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 연구원은 또 광주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2%로 가정하면 연간 자전거 통행량은 1억600대에 이르고, 자전거 이동거리는 2억5천15만1천km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로 얻게 되는 환경 및 기후 편익은 125억6천800만원, 에너지 절감 효과는 382억2천300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연구원은 또 자전거의 강점으로

■ 자전거 수송분담률 2%인 경우 연간 통행량 및 편익					
	광주	대구	인천	부산	대전
자전거 통행량(천 통행)	100,060	190,727	175,730	205,651	119,493
자전거 이동거리(천 km)	250,151	476,819	439,325	514,127	298,732
환경 및 기후 편익(백만원)	12,568	23,955	22,072	25,830	15,008
에너지 절감 편익(백만원)	38,223	72,858	67,129	78,559	45,646
편익 합계(백만원)	50,791	96,813	89,201	104,388	60,654
	44,514				

▲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보조수단▲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교통수단▲ 화석연료 대신 체지방을 에너지원을 하는 이동수단▲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산업생산품 등을 들었다.

최 연구원은 이에 따라 광주시 등 각 자치체는 자전거 이용 증가가 안정·환경·교통·건강·지역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살고 싶은 도시' '환경도시' 등으로 발전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군 광주시 도로시설담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214개 노선 총 381km의 자전거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151개 노선 293.56km의 도로가 개설됐고 자전거 주차장은 381개소로 증가했지만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1995년과 비슷한 수준인 1.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전거가 실질적인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 자동차 위주의 교통 체계와 보행자로 인한 자전거 이용환경의 악화 ▲ 보도 겹용도로의 불법 주·정차 및 노상 적치물 방지 ▲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짧은 자동차 이용기간 ▲ 학생 및 저소득층 위주로 통학·통근 시즌 자전거 이용 등을 들었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관광계획과 교수는 "21세기 녹색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육성하기 위해 자전거 조례 제정과 적극적인 정책 시행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주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만 2006년 11월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가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않고 공사

### 영산강환경청, 6개 사업장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을 삼기기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한 한 완도 장보고 해양문화관광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청은 이를 자체와 사업장에 대해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상급기관에 직무감사를 청구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완도군은 체육시설 결정, 장보고 해양문화관광지 조성 등을 하면서 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지 않았다.

화순군은 동구리 호수공원 시설을 결정하면서 협의전에 시설물을 설치했고, 신안군도 사전협의 없이 장산태양광발전소 부지 지정을 했다.

무안군은 매봉농산물유통시설을 농림지역에 승인하면서 협의하지 않았고, 고흥군은 협의 없이 금산·남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지를 지정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승인기관이 사업승인 전에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환경청 등과 협의하는 제도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최근 이와 관련한 법적조항을 신설, 올 하반기부터 환경성검토 협의전 사전 공사를 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폐휴대전화 年 1,500만대

### 안전 처리 관리대책 시급

폐휴대전화 재사용과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사들의 판촉 경쟁으로 매년 폐휴대전화가 계속 증가, 우리나라에서만 1천500만 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생산자 책임제도(EPR)에 따른 재활용률은 16.5%(불질제활용)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폐휴대전화는 중국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다.

수출된 폐휴대전화에 함유된 납과 카드뮴 등 다량의 중금속과 유해화학 물질은 토양·수질·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면서 중국 현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최대 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입니다.

7월 2일(수) 개강!

합격률 1위!

대한 행정고시학원

## 자리산한약방 디어트

디어트 전문점·조루·허리디스크.

NAVER 검색상위 자리산한약방 를 차렸네요

문의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5512-5530

